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080호

「2024년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 기업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는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의 서비스 및 투자 유치 기반 압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 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데이터·인공지능 창업기업의 서비스 및 투자유치 기반 압축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내용** : 데이터를 핵심역량으로 하는 서비스·기술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전북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의 창업 7년 이내 법인 사업자
- **지원대상** :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 기업
 -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ICT 산업 기업
 -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기술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전환 기업(ex. 제조, 유통, 전북 주력산업 분야 등)
- * 상기 지원대상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해당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기술 상용화 패키지 지원 10개사 내외 / 130백만원
투자유치 IR 지원 5개사 내외 (패키지 지원 10개사 중 5개사)

| 구분 | ① 기술 상용화 패키지 지원 | ② 투자유치 IR 지원 |
|------|------------------|--|
| 지원내용 | ①-1 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 | 투자 유치를 위한 Pin-Point IR 제작 및 투자계약 도출 지원 등 |
| | ①-2 비즈니스 자문 컨설팅 | |
| | ①-3 컴퓨팅 자원 지원 | |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5개사 내외 |

- * 투자유치 IR 지원은 지원대상 중 평가결과 상위순위부터 5개사 내외만 추가 지원
- * 최종 협약 과정에서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① 기술 상용화 패키지 지원 10개사 내외 / 130백만원

- 기술 상용화 패키지 지원 수혜기업 선정 시, ①-1~3 모두 지원

② 투자유치 IR 지원 5개사 내외 (패키지 지원 10개사 중 5개사)

| 연번 | 구분 | | 지원내용 | | | | | | | | | | |
|--|--|-------------|---|-------|-------|---------|---|----------|----------------|--------|---------------------------|----|--|
| ①-1 | 기술 상용화 패키지 지원 | 기술 상용화 자금지원 | -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마케팅지원비 등 지원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해당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제품 제작비</td> <td>-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외주용역비 등</td> </tr> <tr> <td>클라우드 임차비</td> <td>- 민간 클라우드 임차비용</td> </tr> <tr> <td>마케팅 지원</td> <td>- 제품기업 홍보동영상, 브로슈어, BCI 등</td> </tr> <tr> <td>기타</td> <td>- 상기 분야 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제외)</td> </tr> </tbody> </table> | 구분 | 해당 내용 | 시제품 제작비 | -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외주용역비 등 | 클라우드 임차비 | - 민간 클라우드 임차비용 | 마케팅 지원 | - 제품기업 홍보동영상, 브로슈어, BCI 등 | 기타 | - 상기 분야 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제외) |
| | | | 구분 | 해당 내용 | | | | | | | | | |
| 시제품 제작비 | -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외주용역비 등 | | | | | | | | | | | | |
| 클라우드 임차비 | - 민간 클라우드 임차비용 | | | | | | | | | | | | |
| 마케팅 지원 | - 제품기업 홍보동영상, 브로슈어, BCI 등 | | | | | | | | | | | | |
| 기타 | - 상기 분야 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제외) | | | | | | | | | | | | |
| - 기업당 13백만원 이내 (VAT 제외) -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 | | | | | | | | | | | | |
| ①-2 | | 비즈니스 자문 컨설팅 | - 지원기업의 애로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을 통한 비즈니스 자문 컨설팅 지원 | | | | | | | | | | |
| ①-3 | | 컴퓨팅 자원 지원 | - TP 전산서버 자원 개발환경 (Windows 10, Linux) 제공 - CPU (4 Core 이내)/ Memory (128GB 이내) / HDD (5TB 이내) 등 제공 예정 | | | | | | | | | | |
| ② | 투자유치 IR 지원 | | - 투자유치 위한 Pin-Point 투자 IR 밀착 지원 - IR 자료 작성 지원 및 고도화 제작 -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 및 지원 등 | | | | | | | | | | |

* 지원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① 기술 상용화 패키지 지원

①-1 기술 상용화 자금지원

- 수행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의 70%를 협약체결 후 선지급하고, 잔금 30%를 최종점검 후 지급

* 선금 집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SGI 서울보증보험 등)

* 기관 상황에 따라 선지급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ex. 지원금 13,000천원 + 민간부담금 1,300천원 = 총사업비 14,300천원)

①-2 비즈니스 자문 컨설팅

- 데이터 기술 전문가 초빙을 통한 지원기업의 수요 맞춤형 기술 자문 및 애로해소 지원

※ 기관 사정에 따라 자문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

①-3 컴퓨팅 자원 지원

- 데이터·AI 기반 서비스 개발 및 기술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TP 전산 서버 자원 클라우드 등 개발환경 제공

※ 컴퓨팅 자원 세부 스펙 및 내용은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② 투자유치 IR 지원

- 참여기관(엑셀레이터)을 통한 투자 유치 IR 지원

3. 추진절차

| | | |
|---------------|--|------------|
| 모집 공고 |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4. 4월 |
| ▼ | | |
| 신청서 접수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검토 | '24. 4월 |
| ▼ | | |
| 선정평가위원회 | •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 '24. 4월 말 |
| ▼ | | |
| 사업 협약 | • 전북TP-선정기업 사업 협약 | '24. 5월 |
| ▼ | | |
| 선금 지급 및 사업 수행 | • 자금지원 선금 지급 • 지원사업 수행(상용화패키지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 '24. 5~11월 |
| ▼ | | |
| 비즈니스 자문 컨설팅 | • 지원기업 애로기술 자문 컨설팅 수행 | '24. 5~11월 |
| ▼ | | |
| 중간점검 | • 지원기업 사업 수행 중간점검(필요시) | '24. 8월 |
| ▼ | | |
| 최종점검 및 잔금지급 | • 사업완료 최종점검 및 잔금 지급 | '24. 11월 |
| ▼ | | |
| 결과보고 | • 결과보고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 | '24. 11월~ |
| ▼ | | |
| 기업 교류회 | • 기업 성과 보고 및 교류회 | '24. 11월 |

*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4. 4. 4.(목) ~ 4. 19.(금)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각 홈페이지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접수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18:00 까지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janghn@jbtp.or.kr)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붙임] 사업 신청서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공장등록증 등) | 필수 |
| 3 | 자금지원 산출 견적서(세부원가내역서) | 필수 |
| 4 | 사업자등록증(견적발행기업(공급기업)) | 필수 |
| 5 | [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 6 | [별첨2] 민간부담금(현금) 출자확약서 | 필수 |
| 7 |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 8 | [별첨4] 청렴이행각서 | 필수 |
| 9 | 최근 3개년(2021~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유의사항) 관련 규정 근거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지원제외 | 필수 |
| 10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필수 |
| 11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필수 |
| 12 | (기타) 기업 소개자료, 관련자료 등 | 선택 |

[공통사항]

- 제출서류 PDF 변환시, 반드시 기본인쇄(1페이지 1쪽)로 설정 요망(1페이지 2쪽 변환 불허)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
- 각 항목별 서류 제출시 반드시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예시) 재무제표 제출 시, 2023, 2022, 2021년 순으로 정리 후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제출서류의 미비,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문의처**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장한나 주임연구원

T. 063-214-9814 / E. janghn@jbtp.or.kr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서류 적정성 점검 → 발표평가 →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 평가방법

- 평가일정 : '24. 4. 25.(목), 예정 * 해당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 적정성 점검 완료 기업 대상 발표평가
-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 합계 점수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평가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함.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세부 추진 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 사업기간 내 과업 달성 여부, 신청금액의 적정성 | 20 |
| 기업 비전 및 사업성 | - 기업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 및 성장 가능성 - 기업의 실적(매출액, 고용 등)의 우수성 등 | 25 |
| 지원의 효과성 | -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매출, 고용, 성장가능성 등) -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 25 |
| 투자가능성 | - 투자유치 현황 및 가능성 - 투자 자금 조달 능력 및 계획 - 경쟁사 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필요성 등 | 30 |
| 총 점 | | 100 |

※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사항 |
|---|
|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국가·지방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8.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9.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10.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11.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12.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13.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p>*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p>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1.5.)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해 “공공재정지급금” 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

※ 제재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